「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5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골목상권지원단장 김 팔 근
2. 제안이유

가.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여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나. 기존 민간경상보조 방식은 상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다시 운영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사업 추진단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매년 용역사가 변경될 경우 사업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어려워 사업 전반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또한 사업 규모와 참여 상권이 확대될수록 상인회별 운영역량 차이로 현장 운영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상품권 안전관리와 환급자료 검증, 실적관리, 통합 정산 등 사업 전반의 관리 부담도 함께 증가함.

라. 2027년부터 사업대상지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경험과 공공성을 갖춘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47조(활성화 사업) 등

다. 위탁 사무 내용

1)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참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교육, 안내 등 관리

3) 권역별 환급소 설치와 운영, 현장 인력 배치, 민원 응대 및 안전관리

4)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구매증빙 확인 및 환급 처리

5) 환급관리 시스템 운영, 중복환급 및 부정환급 방지, 일일 환급실적 관리

6) 온누리상품권 구입, 보관, 불출, 재고 관리 및 잔여분 관리 등

7) 사업비 집행, 정산, 성과분석,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까지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00백만원 (2027년 기준)

구 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
총 계	**2,000**	
온누리상품권 환급금	1,600	구매금액별 환급 지급 재원
사업운영비	320	환급소 운영인력, 환급관리 시스템, 홍보물 제작, 참여점포 관리, 상품권 수불 및 보관 안전관리, 정산·성과분석 등
위탁수수료	80	공기관 위탁 수수료(4%)

※ 상기 산출내역은 의회 동의를 위한 추계안으로, 최종 세부 산출은 2027년도 예산편성 및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바.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28333(2026. 9. 30.)

- 대규모 환급재원의 안전관리, 대상지역별 환급기준의 통일성, 환급자료 검증 및 정산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사무로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부서의견

가. 2026년 사업은 권역별 상인회 보조금 교부와 통합 운영대행 용역을 결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2027년 사업비 및 사업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단순 보조사업 방식만으로는 상품권 수불, 환급자료 검증, 예산집행, 민원 대응, 성과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구미시의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에 적합함.

다. 따라서 구미형 온누리페이백 지원사업은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고,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정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3)「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47조(활성화 사업) 등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당초예산 2,000백만원(시비) 편성 예정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신규 공공위탁 사무로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의 구매 시 페이백 환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환급재원의 안전 관리와 권역별 환급소 운영, 부정·중복환급 방지, 구매증빙 검증 등 행정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임.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유사 성격의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과 동시에 추진[1]되는 만큼, 구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환급금(각 16억원)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각각의 운영비(4억원)가 별도 반영된 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구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특징 비교

	구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27년 지원 규모(환급액)	16억원	16억원
관내 사용처 범위	가맹점 15,735개소 (연매출액 30억 이하)	전통시장 16개소, 골목형상점가 24개소, 자율상권구역 1개소
수혜 대상	구미시 전역의 지정 기준 충족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이용자
타지역 사용 여부	구미시 외 지역 불가	전국 사용 가능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